

## 공정위, 청와대 2000년 주요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였다. 동 보고에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경제환경의 변화와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임을 인식해 자율과 경쟁 속에 창의가 발휘되는 시장경제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첫째,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 대기업집단의 출자동향을 점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이 무리 없이 해소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한도초과주식처분명령, 의결권 행사 등을 금지시키고, 기업집단간의 탈법적 교차채무보증을 방지하여 대기업의 금융자원 독점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 경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계열사의 인력파견을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하고, 계열금융사가 계열사간의 자금지원의 매개역할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기존 판매업자나 제조업자의 판매방해행위를 시정하고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특히, 전자상거래업의 필수적인 물류 및 택배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정보인프라 독점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와 방문판매법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독과점 구조와 담합관행의 개선책으로 독과점 심화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며, 국내에 영향을 주는 외국기업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심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후, 김대중 대통령은 기업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는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내부거래는 무한 경쟁시대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공정위가 이 문제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로 중간 유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도록 기존 유통업체의 도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관련 시책은 소비자 편익과 후생위주로 전자상거래업자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 대리점 체제업자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협업화나 대형화를 통해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이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을 위해 올해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2만개 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하였다. 동 고시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 시기,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2000년 4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

동 고시의 적용대상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 중 1~1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이며, 적용대상거래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로서 당해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이다.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는 동일거래상대방과의 동일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사회 의결 방법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해 정형화된 금융거래시에는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거래가 일상적인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였고, 비금융·보험회사의

경우도 이러한 거래가 수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별 이사회 의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거래한도, 거래조건 등 중요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즉,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의 내용을 일정 양식에 의해 전산입력하면 되고, 전산입력된 공시자료는 금감위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처리·전송됨으로써 관련기관, 일반투자자, 이해관계인 등이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하여 즉시 검색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감시가 가능해짐으로써 부당내부거래의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 설명은 본지의 ‘공정거래법 해설’(66면)에 게재하였다.

##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수) 「경품류제

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개정(안)을 의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등 고시의 개정은 IMF 경제위기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경품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일부 백화점을 중심으로 아파트, 고급 승용차 등 고가의 사치성 경품제공행사가 빈발하여 소비자의 사행심 조장 등의 부작용이 대두되고,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공정위가 (주)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품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도 고가의 소비자현상경품제공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외국의 규제사례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현상경품제공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및 현행 경품고시 운용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금번 경품고시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시키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경품제공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사업자간 자금력에 의한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가격·품질·서비스에 의한 능률경쟁을 유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또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시장거래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품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현상경품류 가액한도 설정(제8조제1항)

- 소비자현상경품행사시 제공 가능한 경품가액을 최고 100만원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경품규제 완화 이후 제기된 일부 부작용 해소
  - \* 총액한도(예상매출액의 1% 범위 내) 규정은 그대로 존치

■ 기타 경품고시 운용상의 투명성 제고

- 법 적용 대상사업자 및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품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료화(제2조)
  - 현행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에서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경품류로 정의함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산정범위 구체화(제8조제3항)
  - 현행 경품고시에서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범위에 대한 명백한 정의규정이 없어 동 거래와 관련된 예상매출액 산정시 다툼의 소지가 있었음
  - 이에 거래범위가 특정 소비자 또는 점포별로 한정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정도 이에 따라 한정하여 산정(제3호)
  - 또한,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은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함(제4호)
-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시의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 규제 완화(제8조제5항)
  -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소비자현상경품류 총액한도(예상매출액의 1% 이내) 규정을 적용 배제함으로써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
    - \* 가액한도(최고 100만원 이내) 규정은 그대로 적용
- 경품류 가액산정 기준의 보완(제10조제2항)
  - 현행 경품고시에서는 경품류 가액산정 기준을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일원화하

고 있음

- 그러나, 현금 또는 상품권, 할인권과 같이 누구에게나 그 거래가액이 명백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할인되는 금액을 경품류 가액산정의 기준으로 함(제1호 단서)
- 또한, 무료로 경품류를 취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품류 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경품류 가액을 산정토록 함(제3호)
- 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금지 규정 정비(제14조)
  - 현행 규정에서는 응모조건이 불확실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문맥상 단지 2회 이상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응모방법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음
  - 이에, 2회 이상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응모조건이 불확실한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백히 함

## 「중요정보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10월 23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호)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 판매업 등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에 중요정보를 해당 표시·광고 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동 고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개 업종 사업자 모두에 대해 신문, 잡지, 라디오를 제외한 방송 등을 통해 「사업자, 상품,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광고'의 경우에 한해 적용하게 되며,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업자, 상품,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표시'의 경우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의업 1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방송매체' 광고를 할 경우 ⇒ 음성으로 하거나 자막으로 해도 무방하며, '인쇄매체' 광고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였을 경우 “인쇄매체 광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과 같이

해당 인쇄매체 광고사실을 인용할 수 있음.

\* '표시'·'광고'의 구체적 정의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참조.

사업자의 광고 내용에 「사업자 성명·주소·전화번호·허가 또는 등록번호·상품 등의 명칭」과 같은 기본정보만을 포함할 때에는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표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장의업에 대해서는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기본정보만을 포함할 때에도 중요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동 고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거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자는 시행일인 4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인쇄광고물이나 상품 포장·용기 표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등 사업자 유의사항과 고시 내용을 숙지하여 고시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업종별 표시·광고 매체 등 관련사항 요약 ◆

구분	적용업종	적용매체	「기본 정보」만을 포함할 경우 고시적용 여부
“표시”의 경우	1개 업종(장의업)	상품의 포장·용기 등	기본정보만을 포함할 경우라도 중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고시 적용)
“광고”의 경우	10개 업종 모두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 운영업, 증권투자업, 장의업, 체육시설 운영업, 할인카드회원권 운영업, 사진현상 및 촬영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완구제조업)	신문, 잡지, 전단 등 인쇄매체 TV, 케이블TV 등 방송매체 (라디오 제외)	기본정보만을 포함할 경우에는 중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됨(고시 적용 제외)

◆ 현행 적용대상 업종 및 중요정보 내용 ◆

적용대상 업종	중요정보 내용
(1) 부동산중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li> <li>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피해보상기준</li> </ul>
(2) 학습교재 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입 후의 철회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li> <li>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li> </ul>
(3) 학원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li> <li>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li> </ul>
(4) 증권투자업 (뮤추얼펀드·수익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상품이 있는 경우 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 발행 2개의 상품에 대한 총 운용기간의 실현수익률과 종합주가지수 변동률</li> <li>환매 신청 후 환매 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li> <li>성과수수료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li> </ul>
(5) 장의업(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구성비율 및 제조지역</li> <li>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li> <li>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li> </ul>
(6) 체육시설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li> </ul>
(7)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인카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li> <li>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li> </ul>
(8) 사진현상·촬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li> <li>사진원판의 인도가능 여부</li> </ul>
(9) 화물자동차 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실·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li> </ul>
(10) 완구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함·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li> </ul>

##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지난 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어음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시행하였다.

동 인센티브제는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수준 결정시 기준이 되고 있는 “누적별점”의 감점을 내용으로 하는데, 감점대상이 되는 현금결제비율 및 감점폭은 현금결제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업체는 1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업체는 2점을 감점한다.

공정위는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하도급대금 결제시 현금결제를 유도할 수 있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사태 초래하는 등 어음결제에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구매자금용·기업구매전용카드·팩토링 등에 의한 결제액도 현금결제액으로 인정하여 이들 대체결제수단의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현금결제비율 산정방식 ◆

$$\text{현금결제비율} = \frac{\text{현금 등에 의한 결제(사건인지일 직전연도 연간결제액)}}{\text{총 하도급대금 결제액(사건인지일 직전연도 연간결제액)}}$$

- ※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현금·수표·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결제액 외에 어음제도개선방안에서 도입기로 한 구매자금용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액과 팩토링에 의한 결제액을 포함
- ※ 다만, 팩토링의 경우 금융기관(factor)이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구매기업 등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납품기업(하도급업체, 매출채권 양도자)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진정팩토링은 실질적으로 어음과 차이가 없으므로 현금결제액에서 제외

## 인터넷 쇼핑몰 등 43개 통신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1999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342개의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사업자의 광고물을 예비조사하여 표시광고법 위반혐의가 있는 6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

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총 43개 사업자의 광고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들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 부당광고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법

위반 정도를 감안하여 이 중 15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범위반 사실을 당초 광고한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

**< 범위반사업자 >**

(단위:개)

PC통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케이블TV 홈쇼핑 사업자	인쇄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업자	계
21	1	21	43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판매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해 나갈 것이며, 특히 최근 들어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사이트 방문 횟수, 매출액 규모 등을 파악하여 상위업체 중심으로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사업자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일이 규제하기란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넷상의 사기·기만,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감시단」(가칭)을 구성하기 위하여 현재 사이버 소비자단체, 인터넷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동 감시단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부당광고의 유형 및 시정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부당광고 유형**

① 객관적인 입증자료 또는 검증된 임상실험 결과 없이 특정의 효능·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20개사)

- (주)지상양행, (주)조우니컴퓨터, 웹투어(주), 쇼핑플라자, (주)엔터테크, 다산웹서너리, 그린음료, 쉐스(CES)교육출판, J&B, 한마음관광농원, (주)고려인삼금연연구회, 국씨전영양소, 애플홈쇼핑, (주)칼라홈쇼핑, (주)지엠홀딩, 보람씨앤씨인터내셔널, 동방인터내셔널, 동양카드

(주), 한겨레신문사(주), (주)이지클럽

② 객관적 근거없이 관련기관으로부터 특허나 인증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5개사)

- 웹투어(주), (주)엔터테크, 애플홈쇼핑, (주)칼라홈쇼핑, 대한통운(주)

③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해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8개사)

- (주)칼라홈쇼핑, (주)채티비, (주)인터파크, (주)삼구쇼핑, 한국야마시다, 한도기업, 삼성카드(주), (주)넥스토아

④ 제조업체 등이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소비자가” 등의 표현으로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거나, 최근 상당기간 자신이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22개사)

- (주)지상양행, 좋은만남GM, 코리아포인트통상, (주)이맥스코리아, 정보샘, (주)조우니컴퓨터, (주)삼성전자, DAELL C&C, 조이하비, 태흥정보시스템, 쇼핑플라자, 부일정보링크(주), 야루, (주)인터파크, (주)엔터테크, 다산웹서너리, (주)프로라인코리아, 미래로리서치&컨설팅, (주)채티비, (주)기프트서울, (주)삼구쇼핑, 코리아트갤러리

**◆ 시정조치 내용**

• 행위금지명령 및 범위반 사실 공표 : 15개사

- PC통신·인터넷을 통해 공표(5개사) : (주)지상양행, (주)조우니컴퓨터, 웹투어(주), (주)엔터테크, (주)채티비
- 신문공표(4개사) : 코리아트갤러리, (주)고려인삼금연연구회, 한겨레신문사(주), (주)이지클럽
- 월간잡지에 공표(3개사) : 애플홈쇼핑, (주)

- 칼라홈쇼핑, (주)지엠홀딩
- 카탈로그에 공표(3개사) : 동양카드, (주)대한통운, 한솔CSN(주)
- 행위금지명령 : 28개사
- 좋은만남GM, 코리아포인트통상, (주)이맥스 코리아, 정보샘, 삼성전자(주), DAEILL C&C, 조이하비, 태흥정보시스템, 쇼핑플라

자, 부일정보링크(주), 야루, (주)인터파크, 다산웹서너리, 프로라인코리아, 미래로리서티&컨설팅, (주)기프트서울, (주)삼구소평, 그린음료, 쉼스(CES)교육출판, J&B, 한마음 관광농원휴게소, 한국야마시다, 한도기업, 국씨전영양소, 보람씨앤씨인터내셔널, 동방인터내셔널, 삼성카드(주), (주)넥스토아

## 30대 기업집단 채무보증 완전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해소시한이 종료된 2000년 3월 31일 현재 해소대상금액 중 공정거래법에 의해 연장대상이 된 1,36조원을 제외하고 완전 해소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IMF 이후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과 금융자원의 편중배분 등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채무보증 규제 강화와 지속적인 해소독려 및 기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해소노력의 결과로서, 1997년말 현재 33,6조원 규모의 상호채무보증의 사실상 완전해소되었으며, 특히 5대 기업집단은 해소시한 연장금액 없이 완전 해소되었고, 30대 기업집단 중 1998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개 집단(새한, 강원산업, 제일제당, 삼양)은 해소시한이 2001년 3월말에 종료하게 된다.

다만, 6대 이하 기업집단 중 회사정리, 화의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공정거래법상 해소시한 연장요건에 해당되는 7개 기업집단, 16개 회

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 채무보증액 13,671억원의 해소시한을 2001년 3월까지 연장조치 하였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의 사실상 완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로써 개별기업별 독립경영체제 기반 조성 및 핵심사업중심으로의 사업구조조정이 촉진되어 기업경쟁력의 강화와 방만한 차입경영이 억제 및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편중여신의 시정 및 금융기관의 신용대출관행 정착을 통한 금융관행개선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4월 중순경 채무보증해소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과 함께 잔존 예외인정대상 채무보증의 법적 요건 충족 및 예외인정사유 종료 후에도 채무보증의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것이며, 앞으로 신규채무보증 금지가 준수되도록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 ◆ 기업집단별 해소시한연장 채무보증 현황 ◆

(단위:억원)

기업집단	쌍용	동아	고합	진로	아남	해태	신호
채무보증액	1,782	5,066	276	1,042	3,316	705	1,484



## '99년도 기업결합동향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공정위에서 처리한 1999년도 기업결합동향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하였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99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은 총 557건으로서 '98년의 486건에 비해 14.6%의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결합의 내용을 보면 '99년에는 혼합결합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주로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증가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혼합결합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외국기업의 혼합결합 건수가 전체 혼합결합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에서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이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99년에 168건으로 건수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7.3%가 증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87억불로 전년대비 17.6%가 증가하였으나, 건당 금액은 '98년 5600만불에서 '99년 5200만불로 감소하였다.

30대 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168건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업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에서 30.2%로 증가하였는데, 1~5대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합병추진 등 계속적인 내부 구조조정에 따라 계열사간 기업결합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6~30대 기업집단은 규모의 경제 추구, 관련업종에의 진출 증가 등으로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99년 총 557건의 기업결합 처리건수 중 315건은 간이심사에 의해 처리하였으며, 현대의 기아자동차인수건과 오비맥주의 진로쿠어스맥주 인수건 2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철도차량 3사의 통합법인 설립건 및 한국중공업의 발전설비 영업양수건 2건은 예외인정하였다.

### <연도별 기업결합 건수>

	1995	1996	1997	1998	1999
건 수	325	393	418	486	557
증가율(%)	66.7	20.9	6.4	16.3	14.6

### <유형별 기업결합동향>

(건, %)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
1998	172(35.4)	107(22.0)	207(42.6)	486(100.0)
1999	150(26.9)	75(13.5)	332(59.6)	557(100.0)

<업종별 기업결합동향>

(건, %)

	제조업							서비스업								
	기계 조립 금속	전기	석유 화학 의약	비금속 광물	음 식료	기타	소계	금융	건설	도소매 유통 방송	정보 통신	숙박	운수	기타	소계	합계
'98	50	51	75	15	16	50	257	44	19	61	42	4	17	42	229	486
'99	70	58	54	13	21	33	249	58	23	51	65	12	16	83	308	557
증가율	40.0	13.7	△28.0	△13.3	31.3	△34.0	△3.1	31.8	21.1	△16.4	54.8	300.0	△5.9	97.6	34.5	14.6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동향>

(건, %)

	외국기업결합건수	전체기업결합건수	비중(%)	외자규모	건당금액
1998	132	486	27.2	74억불	56백만불
1999	168	557	30.7	87억불	52백만불
증감(증가율)	36(27.3)	71(14.6)	-	13억불(17.6)	△4백만불

<30대 기업집단의 기업결합동향>

(건, %)

		전체 기업	30대 그룹	1~5대 그룹	6~30대 그룹
1998	계열사	196(40.3)	73(53.3)	30(44.1)	43(62.3)
	비계열사	290(59.7)	64(46.7)	38(55.9)	26(37.7)
	계	486(100.0)	137(100.0)	68(100.0)	69(100.0)
1999	계열사	189(33.9)	68(40.5)	36(46.2)	32(35.6)
	비계열사	368(66.1)	100(59.5)	42(53.8)	58(64.4)
	계	557(100.0)	168(100.0)	78(100.0)	90(100.0)

## 2000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5일, 공정거래법상 계열 회사간 신규채무보증 금지와 상호출자 금지 등 경제력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발표하였다.

2000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내용으로 「대우」는 워크아웃 중인 12개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

되고 있어 기업집단이 해체되고 「(주)대우(2개사)」 및 「대우전자(3개사)」가 별도의 기업집단을 형성하였으며, 「현대정유(3개사)」, 「현대산업개발(7개사)」, 「에쓰-오일(2개사)」은 「현대」와 「쌍용」으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기업집단을 형성하였다. 「신세계」와 「영풍」은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한라」, 「해태」, 「신호」, 「강원산업」, 「대상」, 「삼양」은 자산총액 감소로 인하여 지정제외되었다.

2000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주요 특징을 보면 '99년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22.7조원으로 전년대비 49.8조원(10.5%) 감소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었는데, 이 중 기존 23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변동내용이 유상증자(28.7조), 당기순이익(9.0조), 자산재평가(9.2조) 등으로 자기자본은 약 62.7조원 증가한 반면, 부채는 약 54.4조원으로 이 중 금융기관 차입금(연말 기준)은 36.5조원, 회사채는 12.8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존 23개 집단의 전체 부채비율은 '98년말 363.2%에서 '99년말 164.1%로 채무구조가 대폭 개선되었는데, 특히 금년 4대 집단의 부채비율은 146.3%('98년말 : 328.8%)로서 전년대비 182.5%p

감소하였다. 또한 기존 23개 집단 전체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은 2.5%로서 전년의 적자(△17.6조원)에서 흑자(9.0조원)로 전환하였고, 4대 집단의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율은 2.7%(당기순이익 규모: 7.5조원)로 나타났다.

30대 전체 계열사 수는 544개로서 전년대비 142개사 순감되어 계열사 정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23개 집단은 71개사가 편입되고 137개사가 제외되어 66개사가 순감하였으며, 특히 4대 집단은 28개사가 편입되었으나, 계열사 감축목표에 따른 66개 계열사정리로 38개사가 순감하였다.

신규지정된 7개 집단 소속회사들은 기존 채무보증을 2001년 3월 31일까지 해소하여야 하며, 1위에서 10위까지의 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 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회사 ◆

순위	기업집단명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7	(주)대우	2	(주)대우, (주)대우개발
13	현대정유	3	현대정유(주), (주)우림석유, 인천정유(주)
18	에쓰-오일	2	에쓰-오일(주), 범아석유(주)
24	대우전자	3	대우전자(주), 대우모터공업(주), 대우전자서비스(주)
25	현대산업개발	7	(주)아이콘트롤스, (주)케이에이취, 아이앤콘스(주), 에프엠케이(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현대피씨엔지니어링(주)
29	신 세계	10	(주)신세계백화점, (주)광주신세계백화점,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인테리어, (주)신세계푸드시스템, (주)에스코코리아, (주)조선호텔, 신세계건설(주), 해운대개발(주), (주)신세계상호신용금고
30	영 풍	21	(주)서린유통, (주)에어미디어, (주)영풍, (주)영풍문고, (주)이베레페, (주)클린코리아, 고려아연(주), 고려에너지(주), 고려엔지니어링(주), 고려중장비(주), 서린상사(주), 서린정보기술(주), 세원텍스타일(주), 영풍개발(주), 영풍산업(주), 영풍전자산업(주), 영풍정밀(주), 유미개발(주), 코리아니켈(주), 한국전자화학(주), 영풍생명보험(주)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

(단위: 개, 십억원)

순 위	집 단 명	계열사수	자 산 총 액
1 (1) <sup>1)</sup>	현 대	35(62)	88,649(88,806)
2 (3)	삼 성	45(49)	67,384(61,606)
3 (4)	엘 지	43(48)	47,612(49,524)
4 (5)	에스케이	39(41)	40,147(32,766)
5 (6)	한 진	18(21)	20,771(18,548)
6(10)	롯데	28(28)	15,791(10,446)
7 (-)	(주)대우	2 (-)	13,144 (-)
8 (9)	금 호	20(29)	11,532(10,696)
9 (8)	한 화	23(21)	11,430(13,084)
10 (7)	쌍 용	22(23)	9,749(14,167)
11(12)	한 솔	19(19)	9,397 (8,060)
12(13)	두 산	16(14)	7,646 (6,704)
13 (-)	현대정유	3 (-)	7,150 (-)
14(11)	동 아	16(15)	6,519 (8,719)
15(15)	동국제강	14(16)	5,903 (5,764)
16(19)	효 성	13(17)	5,716 (5,178)
17(14)	대 립	18(17)	5,674 (5,825)
18 (-)	에쓰-오일	2 (-)	5,495 (-)
19(16)	동 부	19(32)	5,331 (5,549)
20(20)	코 오 룡	17(19)	4,616 (4,941)
21(21)	동 양	25(21)	4,564 (4,228)
22(18)	고 합	6 (8)	3,711 (5,232)
23(28)	제일제당	18(15)	3,538 (2,728)
24 (-)	대우전자	3 (-)	3,525 (-)
25 (-)	현대산업개발	7 (-)	3,420 (-)
26(23)	아 남	14(15)	3,073 (4,097)
27(25)	새 한	12(15)	3,052 (3,513)
28(22)	진 로	16(17)	2,915 (4,098)
29 (-)	신 세 계	10 (-)	2,723 (-)
30 (-)	영 풍	21 (-)	2,620 (-)
합 계		544(686) <sup>2)</sup>	422,797(472,757) <sup>2)</sup>

주1) ( )안은 '99년도 지정시 수치

주2) '99년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수 및 자산총액합계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3. 2 ~ 4. 15) ◆

◆ 변동현황

2000. 3. 2	2000. 3. 2 ~ 4. 15			2000. 4. 15		
	편입	제외	증감	신규지정	지정제외	합계
577	16	4	12	48	93	544

◆ 변동내용

◎ 편입 : 16개사(지분취득 5, 회사설립 9, 기타 2)

기업집단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현대	(주)삼표제작소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모회사 합병(44.5%)
	강원캐도(주)	철도장비제조업	모회사 합병(100.0%)
삼성	시큐아이닷컴(주)	S/W 개발 및 공급업	회사설립(100.0%)
	유니텔(주)	전기통신, S/W 개발업	회사설립(66.9%)
	(주)올넷	신용, 선불, 직불카드 회원모집대행업	회사설립(58.5%)
	(주)에치티에치	택배사업	지분취득(0%→70.0%)
엘지	(주)데이콤멀티미디어 인터넷	부가통신서비스	회사설립(100.0%)
에스케이	(주)충남도시가스	도시가스공급·판매업	지분취득(0%→51.0%)
쌍용	(주)용평리조트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운영업	회사설립(50.0%)
금호	동아생명보험(주)	생명보험업	지분취득(0%→100%)
대림	한일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 및 투자자문업	지분취득(30%→100%)
코오롱	(주)이엔퓨처	인터넷·정보통신관련 컨설팅업	회사설립(100.0%)
	(주)리치앤페이머스	사업 및 경영자문업	회사설립(100.0%)
제일제당	드림디스커버리(주)	창업투자업	회사설립(100.0%)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영상물·캐릭터 등 제작판매업	주식취득(0%→82.6%)
	드림뮤직(주)	S/W 개발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회사설립(100.0%)

◎ 제외 : 4개사(지분매각 3, 기타 1)

기업집단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한진	한진투자증권(주)	종합증권업	지분매각(24.2%→23.1%)
	서울투자신탁운용(주)	투자신탁운용	한진투자증권 자회사
동아	서원레저(주)	골프장경영업	지분매각(100%→34%)
효성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화학제품 제조업	지분매각(50%→0%)

◎ 상호변경 : 9개사

기업집단	변경 전	변경 후	등기일
삼 성	삼성항공산업(주)	삼성테크윈(주)	2000. 3. 23
	삼성전관(주)	삼성에스디아이(주)	1999. 11. 26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삼성투자신탁운용(주)	2000. 3. 30
엘 지	(주)부민상호신용금고	(주)부민신용금고	2000. 2. 19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 이사관 승진

공보관

장항석(張恒碩)

● 부이사관 승진

총무과장

한영섭(韓榮燮)

총괄정책과장

송하성(宋河星)